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49,010,130	28,470,304
일반회계	785,470,882	23,564,126
특별회계	163,539,248	4,906,177
공기업특별회계	46,533,032	1,395,991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162,619	394,8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370,413	1,001,112
기타특별회계	117,006,216	3,510,18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015,483	660,464
주택사업특별회계	3,133,948	94,01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059,256	121,77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87,052	32,612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5,148	154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034,104	61,023
교통사업특별회계	7,764,022	232,921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7,636,996	2,029,11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9,270,207	278,106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721,11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 된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